# 목포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3년 9월 4일

나. 제 출 자 : 목 포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3년 9월 5일 라. 상정일자 : 2003년 9월 25일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설명

o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2003. 9. 25) : 문 열 상 도시건설국장

#### 나. 제정이유

-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 1. 1부터 제정되어 발효되어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 o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제정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다. 주요골자

- o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렵방법의 확대운영
  -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자문단구성 운영과 공청회개최 계획의 다양한 전달 및 주민의견 수렵 확대방안 모색
  -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청취 기회확대및 방법을 일간신 문외 시보, 시청게시판, 동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방법의 다 양화를 추구
  - o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제한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만을 허용하도록 하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조례, 기존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던 행위는 모두 수용하는 방안으로 제정
- o 건폐율 및 용적율 규정
  -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지역·지구의 건폐율 상한선과 종전의 도시계획 조례의 범위에서 기준설정

o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방법·인원·임기·회의운영 및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과 용도지역등의 변경, 지구단위계획등의 심의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등의 사항 규정

## 3.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4. 위원회 활동

- 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2003. 9. 25)
  - o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 나.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2003. 9. 26)
  - o 의견개진 및 심사의결

#### 5. 토론요지

- o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있어 경사도를 20도로 하는 것이나 25도로 하는 차이점은 별로 없다고 보며 너무 강화하면 일부 구도심의 발전에 저해되고,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사도 20도를 25도로 수정
- o 구도심의 경우 도시계획상 30미터내지 34미터 정도의 블록단위로 되어 있어 전용주거지역 50미터, 일반주거지역 40미터로 제한할 경우 주거지역과 관련이 없는 블록에도 숙박시설, 위락시설등을 할 수 없어 오히려 공동현상을 발생 하게 하는 우려가 있고 준 주거지역의 경우 의미가 없음.
- o 하당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현재 너무 많은 여관이 난립되어 숙박시설을 지으라 해도 못지음. 규제를 강화할려고 했으면 진즉에 했어야지 하당지역에 많은 여관이 건립되고 난후 강화한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나타냄.
  - o 따라서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진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허가하되, 30미터를 초과하고 100미터이내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할수 없게 제한하는 것이바람직함.

o 규제를 너무 완화하면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도 발생하는데 대책은, 조례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9호내지 12호의 별표 내용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12호의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 50미터, 일반주거지역40미터, 준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을, "전용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이상"으로 수정하고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를 초과하고 100미터이내에 위치한 대지에 숙박시설(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함.

# 6. 심사결과 【수정가결】